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18 선고 2020가단5101655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, 손성락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7. 14.

판결 선고2020. 8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,638,305원 및 그 중 5,050,849원에 대하여 2019. 5. 16.부터 2019. 6. 14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2020. 6. 18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명재권

별지